



돼지고기 세계적 무역과 우리의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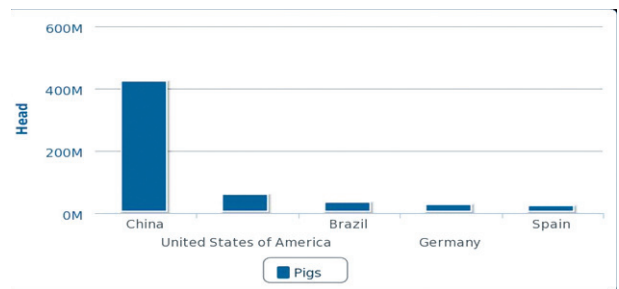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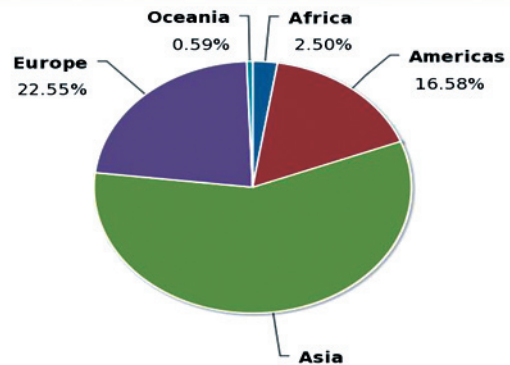
이 상 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위험평가과장/기술서기관/수의학박사
 sjlee1122@korea.kr

I. 들어가며

세계는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멀어도 30시간 이내이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든 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IT산업,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유행한 “말춤”은 순식간에 전세계를 강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가 우리 눈 앞에, 아니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축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돼지가 도축·가공되어 며칠이면 바로 우리나라 식탁에 올라온다. 수출 상대국에서 구제역, 돼지열병 등 특별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양호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에도 자유롭게 무역이 된다는 점이다. 쇠고기, 닭고기와 함께 우리 국민의 주요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자 축산업에서도 중요한 무역 대상이 되고 있는 돼지는 얼마나 사육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국인지, 어떤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돼지고기의 무역 동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글로벌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필자는 본 지를 빌어 전세계 돼지의 사육두수, 무역동향, 수입위생조건, OIE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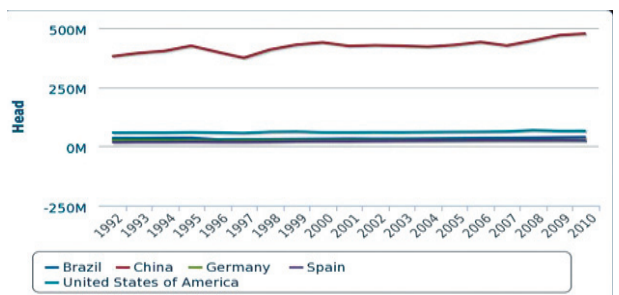
22.55%, 아메리카가 148,759천두로 1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사육국가는 중국 약 4억2천두, 미국 약 6천두, 브라질 약 3천두 순이다. 대륙별 사육비율, 주요 국가별 두수 및 연도별 사육동향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II. 전세계의 돼지 사육두수

가. 세계 돼지 사육두수

전세계의 돼지 사육두수는 약 9억7천만두로 이중 약 47% 정도가 중국에서 사육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계의 1992~2010년간 평균 돼지 사육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518,378천두로 57.77%, 유럽이 202,312천두로



* 출처 : FAO STAT

나. 주요국의 돼지 사육 두수

현재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된 미국 등 전세계 22개국의 2011년도 돼지 사육 두수, 사육밀도, 농가수는 아래 표와 같다. 22개국 중 미국이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는 독일, 스페인, 멕시코 순이다. 토록 하고 있다. 다음 자료들은 지난 3년간 OIE에 보고된 전세계적의 사육 또는 야생돼지에서의 돼지 열병 발생에 관한 데이터이다.

구분	두 수	밀도(km ² 당)	농가수
네덜란드	12,429,138	299.31	6,525
뉴질랜드	322,609	1.20	7,311
덴마크	13,342,367	309.61	8,748
독일 ¹⁾	26,870,700	75.26	32,900
미국	65,931,000	6.85	69,100
벨기에	6,193,957	202.89	5,544
멕시코	15,435,412	7.83	... ²⁾
스위스	1,588,998	38.48	8,848
스웨덴	1,482,591	3.29	4,678
스페인	22,071,441	43.72	92,125
슬로바키아	450,114	9.22	6,975
아일랜드	1,552,900	22.10	3,656
이탈리아 ¹⁾	9,182,314	30.48	129,397
오스트리아	3,097,253	36.93	31,726
영국	4,440,631	18.14	10,827
칠레	2,951,528	3.90	75,256
프랑스	13,921,515	25.45	24,454
핀란드	1,335,114	3.95	1,917
폴란드	12,617,839	40.35	289,545
캐나다	11,975,000	1.20	11,497
호주	2,300,000	0.30	... ²⁾
헝가리	3,032,000	32.59	... ²⁾

비고 : 1) 2010년도 통계, 2) 자료없음

* 출처 : OIE WAHID

다. 돼지고기 생산량

1) 세계의 돼지고기 생산량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0~2010년간 연평균 약 2%대로 증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증가율이 2.7%로 선진국의 0.9%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분	2009 (천톤)	2010 (천톤)	연평균 증가율(%) (2000~2010)
세계	106,405	109,258	2.0
개발도상국	66,251	68,428	2.7
- 아프리카	1,189	1,232	4.8
- 아시아	58,615	60,591	2.6
- 중남미·카리브해	6,357	6,514	2.4
- 오세아니아	91	91	1.6
선진국	40,096	40,773	0.9
- 북미	12,385	12,112	1.7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697	1,693	0.1
- 유럽	26,013	26,968	0.6

* 출처 : FAO 세계식량농업 통계연감 2012 / FAO 한국협회

2)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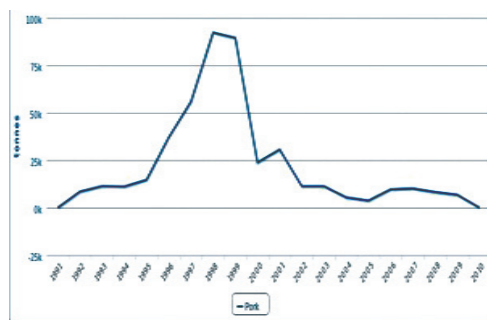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10년간 연평균 약 1.8%대로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북한의 경우에는 -2.4%를 기록하였다.

구분	2009 (천톤)	2010 (천톤)	연평균 증가율(%) (2000~2010)
한국	1,062	1,097	1.8
북한	110	11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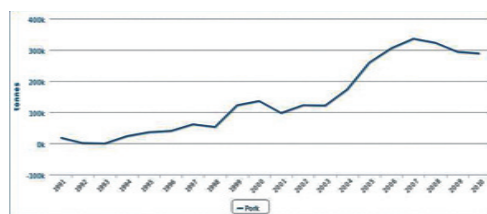
* 출처 : FAO 세계식량농업 통계연감 2012 / FAO 한국협회

라.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무역동향

지난 10년간(1991~2010년도) 세계의 돼지고기 무역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1998년도에 92,226천톤으로 가장 많은 수출물량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수출물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반면 수입은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 이후 큰 변동은 없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동향>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동향>

Ⅲ. 돼지고기 교역을 위한 위생조건

가. OIE(세계동물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 주요 질병별 교역 조건을 권고하고 있다. 돼지고기로 전파가 가능한 주요 질병에 대한 OIE의 교역 권고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질병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위생조건상 국가비발생 조건을 두고 있다.

1) 구제역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에서만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제역 예방접종 미 실시 청정국과 예방접종 청정국산 돼지고기의 교역조건을 살펴보겠다. 우선 예방접종 미 실시 청정국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미 실시 청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동물이 유래하고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가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동물이 유래하고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 돼지열병

사육 돼지고기의 돼지열병 관련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돼지열병 청정국 또는 지역산의 경우, 돼지열병 청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동물이 유래하고 생체 및 해체검사서에서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없었음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육 돼지고기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국 또는 지역산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후 또는 최소 지난 40일간 사육되었고 생체 및 해체검사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없었음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4) 돼지수포병

돼지수포병 청정 국가산 돼지고기의 경우, 생후 또는 최소 과거 28일간 돼지수포병 청정 국가에서 사육되었고 생체 및 해체검사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없었음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우리나라로 외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수입위생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상의 요구사항을 크게 나누면, 출생 및 사육 조건, 국가 및 농장 질병비발생 조건, 도축장 및 가공장에 대한 위생조건, 잔류물질 및 미생물 등 식육의 위생에 관한 조건, 운송에 관한 조건, 기타 제품 관련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생 및 사육 조건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으로 하고 있다.

2) 국가 및 농장 질병비발생 조건

국가비발생 조건으로는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 전 3년 이상 브루셀라병, 도축 전 2년 이상 탄저병, 도축 전 1년 이상 돼지오제스키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도축장 및 가공장에 대한 위생조건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 등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수

출작업장은 상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잔류물질 및 미생물 등 식육의 위생에 관한 조건

수출돼지고기는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미생물이 허용기준(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다.

5) 운송에 관한 조건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우리나라에 도착 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 중에는 우리나라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다.

6) 기타 제품 관련 정보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도측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도축 및 가공기간,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 등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검역증명서 상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다. 수입허용절차(8단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동물이나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총 8단계의 수입허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1단계로 수입허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2단계로 상대국에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하게 되며, 3단계로 상대국에서 답변서가 제출되면, 4단계로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및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수입허용이 가능한 수준의 위험일 경우, 5단계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최종 수입허용여부가 결정될 경우, 6단계로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7단계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고, 8단계로 수출작업장 및 검역증명서 서식을 승인하게 되면 수입허용절차가 마무리 된다. 각 단계별 주관부처 및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별	주관	주요 업무
1단계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 수입허용요청 -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위한 수입허용 신청 ○ 수입허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 수입위험평가 실시 - 상대국이 제출한 가축위생상황 및 방역제도 등에 관한 정보, OIE 정보 등 기 확보된 정보를 기초로 예비 위험평가를 실시
2단계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검역검사본부	○ 가축위생설문서 작성 및 송부 - 상대국내 가축방역조직, 제도, 질병발생상황 및 발생시 통제능력 등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한 가축위생설문서를 작성하여 상대국에 송부
3단계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검역검사본부	○ 수입위험평가 실시 - 상대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기초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 위험제거를 위한 검역방안 등 평가 ○ 필요시 추가 또는 보완자료 상대국에 요구

4단계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 현지조사단 파견 - 상대국 제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3단계까지의 위험 평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현지 가축위생실태 조사실시(검역 및 방역전문가) ○ 수입위험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5단계 (수입허용여부 결정)	농식품부	○ 수입허용여부 결정 - 위험평가결과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수입허용 방침결정 - 최초 수입허용국가 등 필요시, 가축방역전문가, 대학교수 및 축산단체장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입허용 여부 검토 및 장관에게 권고
6단계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 위생조건안 협의)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위험평가 결과, 위험관리가 필요한 가축전염병 및 잔류 물질 등의 유입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물·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작성 - 수입위생조건안을 상대국에 제시 및 협의
7단계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농식품부	○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및 이행 당사자 의견수렴 ○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관보게제)
8단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석협의)	검역검사본부	○ 상대국이 승인 요청한 수출작업장 승인 ○ 상대국이 제시한 검역증명서 서식(안) 협의 및 확정

IV. 최근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 동향

현재 돼지고기 관련 수입위생조건은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 등 세계 22개국과 체결되어 있다. 지난 3개년(2009~2011)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한 국가를 살펴보면 유럽, 미국, 멕시코,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에서 수입되었다. 2011년의 경우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어 있는 22개국 중 뉴질랜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를 제외한 18개국에서 수입되었으며,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입량을 차지하는 미국산 약 143천톤을 선두로 캐나다산 약 47천톤, 독일산 약 27천톤이 그 뒤를 이어 수입되었다. 이들 수입 돼지고기의 kg당 평균 수입 가격은 대략 kg당 3~4\$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수입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2009		2010		2011	
	건수	수량(톤)	건수	수량(톤)	건수	수량(톤)
오스트리아	622	12,839	664	13,376	922	17,934
호주	15	27	6	7	8	141
벨기에	499	10,622	619	13,277	641	13,830
캐나다	1,442	26,266	1,184	17,743	2,463	47,567
칠레	2,165	36,303	1,797	29,862	1,781	24,991
독일	-	-	231	4,766	1,290	27,130
덴마크	86	1,813	49	1,005	752	16,330
스페인	457	6,512	491	5,960	830	11,690
핀란드	175	3,776	179	3,801	239	4,800
프랑스	685	14,207	687	13,852	786	16,465
영국	-	-	6	136	28	624
헝가리	314	4,738	229	3,501	440	7,546
아일랜드	-	-	-	-	89	1,953
멕시코	318	3,954	440	5,806	586	7,907
네덜란드	521	11,250	645	13,154	913	18,893
폴란드	135	2,496	129	2,130	479	9,244
스웨덴	14	233	9	149	12	294
미국	3,858	74,822	2,689	51,008	6,886	143,048
계	11,306	209,858	10,054	179,532	19,145	370,387

IV. 맺음말

돼지고기 뿐만 아니다. 모든 축산물의 수출입은 WTO/SPS 협정, OIE 규정에 따른 질병별 위생규약,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진다. 이 수입위생조건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8단계의 수입허용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국도 우리나라와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 및 수입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반면 양돈농가의 경우 사료 등 생산단가의 고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돼지고기 수입영업자의 경우

국내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의 가격메리트 상실로 인한 시장점유율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창고에 쌓여있는 수입 돼지고기의 재고량은 구제역 파동 이전인 2010년에 비해 76%나 많다고 한다.

복싱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축산물의 수출을 늘려 국내 축산업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관이 협력하여 구제역 등 중요 가축전염병의 청정화를 달성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방역 및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세계에 널리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돼지 및 그 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고, 질병 및 위생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 하여도 수입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 즉 동등성원칙, 가축질병 및 위생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돼지(종돈)와 돼지고기는 수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